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길라잡이

### '가락지빵'을 아시나요?

도넛을 부르는 북한말입니다. 부르는 말은 다르지만 맛있는 도넛이나  
가락지빵을 좋아하는 건 똑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특별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마나 지원해 주냐', '문제는 없을까'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 드립니다.

차이를 넘어서 둥근 도넛처럼 더불어 사는 길, 통일부가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도 풍요로운 통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만 4천명의 탈북민도 제대로 감싸 안지 못하고서 2천 4백만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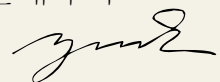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벽찬 도전입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갖고 우리와 함께 보람있게 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 지역사회 등 우리 모두의 따뜻한 이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시련에 꺾이지 않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길라잡이

「북한이탈주민 고용길라잡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과 생활, 고용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 채용 방법 및 절차, 고용 사례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문답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이탈주민 고용길라잡이」 발간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기업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통일부장관 류 우 익



—  
목  
차  
—

01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0

Q.01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10

Q.02 우리 기업이 있는 곳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을까요? 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개관 12

Q.03 북한이탈주민을 왜 도와주어야 하나요? 12

Q.0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3

Q.05 하나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16

Q.06 하나원을 나오면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나요? 17

Q.07 거주지에서는 누가 도와주나요? 18

Q.08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9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22

Q.09 북한이탈주민도 남한에 가족이 있나요? 22

Q.10 북한이탈주민, 남한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23

Q.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3

Q.12 북한에서의 직업생활은 남한과 다른가요? 24

인적자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 26

Q.13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인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26

Q.14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훈련을 받나요? 27

Q.15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발휘 수준, 어느 정도 일까요? 28

Q.16 성공적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고용주분들께 달려 있다가니까요? 29

## 02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32

- Q 01 고용지원금 제도가 무엇입니까? 34
- Q 02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면 왜 고용지원금을 주나요? 34
- Q 03 북한이탈주민 중에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지원이 되나요? 34
- Q 04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5
- Q 05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이 연장도 되나요? 35
- Q 06 고용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5
- Q 07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6
- Q 08 고용지원금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39
- Q 09 영농취업자의 고용지원금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39
- Q 10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42
- Q 11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기업도 있나요? 42
- Q 12 이럴 때는 고용지원금이 중지 또는 제한 돼요! 42
- Q 13 이럴 때는 고용지원금이 중지되지 않아요! 43
- Q 14 고용지원금이 해당되는 입사일과 퇴직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44

고용지원금 제도를 현장사례별로 알아보을까요? 46

- Q 15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서 받는 고용지원금이라며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46
- Q 16 다른 직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도 되나요? 48
- Q 17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지원금 지급이 해당되나요? 49
- Q 18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을 가입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49
- Q 19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급여에서 4대보험료 공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51
- Q 20 채용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함께 연대하는 기관이나 제도가 있습니까? 52
- Q 21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취업장려금제도는 무엇입니까? 53
- Q 22 자격취득장려금은 어떤 제도입니까? 54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대상 정책자금 우대지원은 무엇인가요? 56

### 03 북한이탈주민 채용 방법 및 절차

북한이탈주민 채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60

Q 01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채용해야 하나요? 60

북한이탈주민 관련 채용기관 및 사이트 안내 62

Q 01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을 이용하면 되나요? 62

Q 02 북한이탈주민을 알선해 줄만한 지역의 전문가나 기관이 있나요? 66

Q 03 북한이탈주민이 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가 무엇입니까? 72

### 04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관련 Q&A

Q 01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76

Q 02 근로능력에 맞는 급여를 책정했는데, 급여가 적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77

Q 03 근로조건에 의심이 많고, 출퇴근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취업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78

Q 04 작업지시자의 지시사항을 듣지 않고, 사장님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79

Q 05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면 다른 근로자와의 갈등이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80

Q 06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도 문제없습니까? 신분은 확실한가요? 82

Q 07 정착지원제도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왜 적응을 못하나요? 83







# 01

##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 Q01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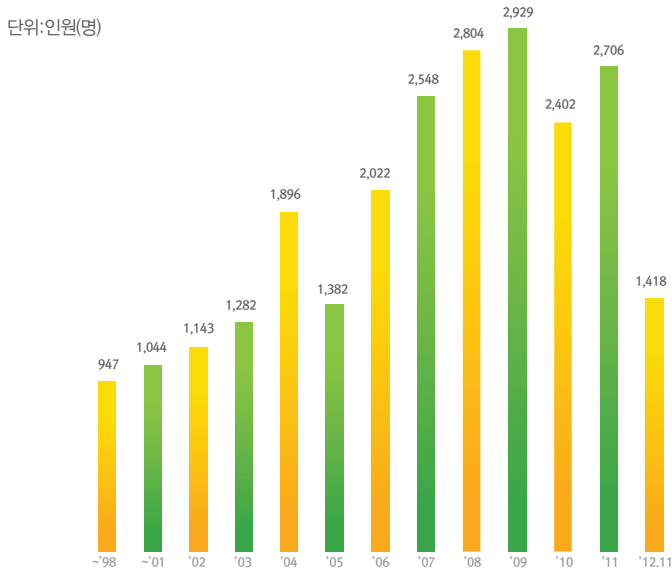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할까요? 어렵지만 법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중, 대한민국의 보호를 신청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기존 남한 주민들과 달리 남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생활기반 미흡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원 대상자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를 사용할 뿐, 우리들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하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외국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 Q02 우리 기업이 있는 곳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을까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인원은 24,523명(2012년 11월 기준)이고, 이 중 여성이 전체의 69%로 남성에 비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분포를 보면 근로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연령대인 20대~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9%입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아신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북한이탈주민의 65%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지만 점차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하나센터에 문의하시면 취업의사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①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인원(명)	5,982 (29%)	5,656 (27%)	1,940 (9%)	848	746	808	670	782
지역	충북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인원(명)	686	566	529	441	458	427	275	142

총 인원 20,956명 (2012.2월 기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개관



### Q03 북한이탈주민을 왜 도와주어야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정권의 정치적 억압과 극심한 생활고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아온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의무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발전 목표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정부와 국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배려를 잘하는 것은 국가 선진화의 발판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포용력은 선진복지국가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보통 이주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세기 넘게 떨어져 있던 남과 북이 과연 통일후에도 사회통합을 원만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 이전 서독의 동독 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도 인도주의 원칙과 통일독일을 준비하는 장기 전략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남북통일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폐쇄적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낯선 시장경제의 경쟁 속에서 이들이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 Q 0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째, 탈북 후 해외 체류 중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비무장지대를 넘어 국군 부대에 귀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임시보호 조치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를 희망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이들을 전원 받아들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이 맞는지부터 탈북 및 입국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등 우리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셋째,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통일부 하나원으로 옮겨져 우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3개월 동안 받습니다. 여기에서 탈북민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각종 질병 유무 확인 및 치료 등 건강관리와 더불어, 우리말, 역사, 외래어, 생활법규와 준법의식 함양, 국가정체성 형성 등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받습니다.

또한 진로상담을 거쳐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진출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들은 거주지의 정규학교에 편입하여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넷째, 하나원 교육을 마치면 자신이 택한 거주지의 임대주택을 우선 받게 되며, 통일부와 지자체가 지정·운영하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3주간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찰서·고용센터에 탈북민 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이들을 통해 신변을 보호받고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단체와 먼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설립한 단체로부터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세스 ①

보호요청 및  
국내입국

- 재외공관 또는 체류국 임시보호 시설 수용
- 신원확인후 체류국과 입국 교섭 및 지원

합동 조사

- 입국후 관계기관 합동 조사 (\* 탈북 동기, 입국 경위, 북한 생활 등)
- 조사후 통일부 하나원으로 이송

보호결정

- 통일부에서 정착지원법상 보호여부 결정  
- 세대단위 결정 및 정착금 책정

하나원  
정착준비

- 사회적응기본교육(3개월)  
- 문화적 이질감 해소, 정서안정, 진로상담 등
- 초기 정착지원  
- 정착금 지급,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주거알선 등

거주지  
보호

- 지역적응교육(3주)
- 사회복지망 편입(생계급여, 의료급여, 연금특례)
- 취업지원 : 국비 직업훈련, 학경력 및 자격인정, 취업 관련  
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 교육지원 : 정규학교 편입, 대학 특례 편입학 및 학비 지원
- 보호담당관 : 지자체·경찰서·고용센터 담당관 지정

민간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취업, 교육, 생활안정, 단체지원 등 민간부문 활성화  
-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민간지원봉사자) 제도 운영

## Q05 하나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국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하기만 합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원은 본원(안성)과 분원(화천)으로 나뉘져 있고 총 12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진로지도·직업훈련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하나원 교육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직업훈련입니다. 컴퓨터 교육, 외래어 교육, 노동관련 법 교육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에서부터 전자조립, 봉제, 피부미용, 자동차 정비, 중장비, 용접 등 전문적인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을 마련,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실제 사업현장과 직업훈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체험의 폭을 넓혀갑니다.

하나원 안에는 학교(하나돌학교)와 병원(하나의원)도 있습니다. 하나돌학교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 및 학력별 수업을 진행하여 일반학교 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의원은 내과, 치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을 운영하며 탈북 과정에서 지친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시켜 줍니다.

대부분 남한에 연고지가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하나원을 나가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해주며,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돕는 것도 하나원의 역할입니다.



## Q 06 하나원을 나오면,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나요?

하나원을 나오는 북한이탈주민은 주거·정착금 지원, 생계·의료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에게 하나원 교육기간 중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개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주거지를 정하고 세대별로 전국의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줍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할 때에는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착금 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착금 기본금에서 초기지급금은 하나원을 나오는 즉시 지급되며, 분할지급금은 1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주거지원금은 실업주보증금만 지원하고 그 잔액은 5년 후에 지급됩니다.

세대원수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 계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소 계		
1인	300	300	600	1,300	1,900
4인	600	1,300	1,300	1,700	3,600
7인이상	900	2,200	2,200	2,000	5,100

노인 또는 장애·질병이 있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추가 가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정착금 가산금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연령	만 60세 이상	720
장애	장애등급별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3개월 이상 입원	개월×80 (최대 9개월)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만 13세 이하	360(세대당)

하나원을 나와 거주지에 정착한 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에는 세대원 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합니다.

또한 무직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 진료비·치료비 감면 등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하나원을 나와 거주지로 정착하는 탈북민에게 생필품 꾸러미인 '생활안정키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속히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Q07 거주지에서는 누가 도와주나요?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지역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등으로부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3주간의 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 밀착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착도우미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친근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보호담당관 제도(거주지, 취업, 신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지방자치단체)은 거주지 편입과 행정을 지원 하며, 취업보호담당관(고용센터)은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담당관(경찰서)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하나원 수료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민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적응센터,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력네트워크입니다.

### Q 08 북한탈주민의 취업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취업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자격 취득·취업후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금의 1/2를 최대 3년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취업기간	지급액
취업일~1년	임금의 1/2, 월 50만원 한도
1년~2년	임금의 1/2, 월 70만원 한도
2년~3년	임금의 1/2, 월 70만원 한도

-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120~240만원의 직업훈련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우선선정 직종이나 1년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탈북민에게는 20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총 수료시간 (이상)	500	620	740	860	980	1,100	1,220
금액(만원)	120	140	160	180	200	220	240

-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하며,
- 북한이탈주민이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취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취업 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50
	1년차	550
	2년차	600
	3년차	65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노동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탈북민들이 좋은 기업체에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 Q09 북한이탈주민도 남한에 가족이 있나요?

과거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한 분들을 보면 남성 단독 입국이 많았던 반면 점차 여성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가족동반 입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남한에 친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명 중 1명 정도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직업생활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물론 직장 동료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따뜻한 이웃사촌이 되어 주고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을 보면 북한에서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의 제3국가에서 체류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고단한 탈북과정에서 이국땅에 가족을 두고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평범하게 살면서도 가족이 아프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주고자 하듯이 북한이탈주민도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마음이 지나치게 앞서 직장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족에게 달려가 주변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Q 10 북한이탈주민, 남한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50년 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문화적 동질감과 이질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가끔 TV에서 북한 아나운서 목소리를 들으면 사용하는 용어나 억양이 많이 달라 놀라기도 하고 이러한 색다름 때문에 코미디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북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이질감을 느끼는 만큼 북한 이탈주민도 남한 아나운서의 목소리, 남한 사람들의 평상시 말투와 억양에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라는 화두 속에서 남한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를 우리말에 많이 섞어 쓰는 반면, 폐쇄적인 북한에서 생활한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외래어, 특히 영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음식문화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빈번한 교류와 경제적 풍요로움에 기초한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남한의 음식이 북한이탈주민의 입맛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름'에 대한 남한 주민의 자세입니다. 완전히 문화가 다른 서양이나 다른 민족의 출신자라면 언어와 풍습이 다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러한 '다름'에 대해서 동경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이러한 '다름'을 달리 적용하는 듯합니다. 남한 주민의 사고방식, 말투, 용어만 옳은 것으로 여기며, 이와 다른 북한식 언어, 사고방식, 행동양식을 했을 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구분해 주세요.

**Q 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한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이 유입되는 규모가 늘어나면서 생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풍문과 고정관념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한국 대학생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보면 '우울한, 참을성 있는, 순진한, 부지런한, 성실한, 공격적인, 비관적인, 엄격한, 진지한, 착한 등'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남한의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이 '집단주의적이고, 엄격하고, 타율적이고, 몰개성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그럴 것이다'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만난 북한이탈주민이 어떤 행동을 하면 모두 그럴 것이라고 잘못된 일반화를 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어렵짐작하기보다 직접 만나서 경험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 Q12 북한에서의 직업생활은 남한과 다른가요?

북한에서의 직업생활과 근로는 남한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 헌법 29조에는 실업의 개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및 기업이 임의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이 '해고'의 위협이 있는 남한의 노동시장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북한에서는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없고, 국가에 의한 배치에 의해 일자리가 정해지고 취업이 성립되는 기관(또는 기업소)에 근로자로 등록되며 노동법률 관계가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직장에 지원하여 선발되는 남한의 구직 절차와 상당히 다르다보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셋째, 노동에 대한 보수 지급의 개념이 다릅니다. 남한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자는 이 임금 내에서 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북한에서는 '생활비'라는 형태로 적은 액수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국가가 관리하여 근로자의 교육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 인적자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



### Q13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인으로서 어떤 특성이 있나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은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강점으로는 첫째, '강인함'입니다.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과정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려운 일에 직면하였을 경우, 굴하지 않고 부딪혀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인내심'입니다. 탈북, 제3세계에서의 체류, 남한이라는 낯선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종류의 극한 상황을 참아낸 경험자들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경험이 직장 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어려움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첫째, 남한 직장의 노동 강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북간 노동 강도의 차이를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비교하여 남한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세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방직공장처럼 기계에 노동 속도를 맞춰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작업장에서 휴식시간을 자주 갖고 느린 속도로 일을 하는 직장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강도의 차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일터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직장 문화 및 작업장 분위기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북한이탈주민이 게으르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생각한다면 이런 오해는 쉽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탈북에서 남한 입국에 이르기까지 생사를 오가는 극한의 경험으로 심신이 지쳐 있고 건강을 해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 전 건강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최고의 몸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피병 부리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모든 가족이 함께 남한에 입국한 행운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제3국에 가족을 두고 이픔을 안고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있습니다. 가족문제 해결 때문에 직장에 소홀하거나 갑작스럽게 결근을 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 몰입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가족의 안전과 안위를 걱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준다면 북한이탈주민도 직장생활과 가족문제 해결간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14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훈련을 받나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교육을 받습니다. 12주에 걸쳐 총420시간이라는 전체 교육시간동안 취업 및 직업훈련 관련 교육이 196시간으로 많은 시간이 직업훈련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업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직업 (예: 요양보호사, 기초전자조립, 품질관리기초, 봉제, 용접 등)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단기집중 직업훈련이 다수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원은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나원 수수료 전 매월 1회씩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 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채용면접과 중소기업 현장탐방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남한의 직장문화와 중소기업에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 교육을 이수하고 거주지에 정착하면 거주지 기반 정착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교육 기관(하나센터)이 전국 30개 지정되어 있어 이 기관이 거점이 되어 취업지원교육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등 다양한 국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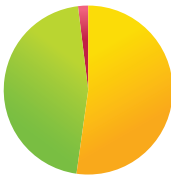
### Q15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발휘 수준, 어느 정도 일까요?

일례로 대우 남포공장이나 경수로공사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의 낮은 노동기술수준이 사업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경수로공사 현장에서 1997년 약4개월간 동일 작업을 수행한 북한 노동력의 노동생산성은 남한 노동력과 대비하여 평균 36%에 불과한 것으로 실측되었다고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수준, 기술력, 교육, 직업선택 과정, 노동에의 통제권 등 다면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유발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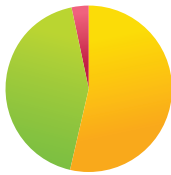
한편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어떨까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남한 사업주 422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근로능력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근로능력 영역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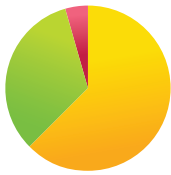
업무수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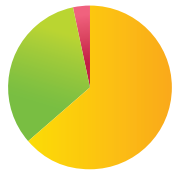
필요기술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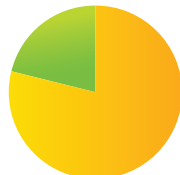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성실성



불만족



보통



만족

## Q 16 성공적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고용주분들께 달려 있다니까요!

어렵게 취업의 문을 통과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북한이탈주민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계별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호소합니다. 초기 적응기간에는 언어 문제와 편견, 차별대우가 가장 큰 애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이상의 적응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장래성 부재, 저임금, 해당 분야 지식 부족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 하니 안타깝습니다. 동료나 고객들로부터 불신과 의심, 이유 없는 거부감, 적대감, 무시와 경멸, 따돌림과 소외, 부당한 대우와 차별이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적응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북한 이탈주민' 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직원' 으로 고용주분들께서 대해 주신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적응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 02

##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지원 제도



##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1년 연장하여 3년까지 지원함.

- 취업보호기간(2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 5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	지원기간	지원 금액
취업보호대상(☞ Q3)	취업일~1년	임금의 1/2, 월 50만원 한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	1년~2년	임금의 1/2, 월 70만원 한도
	2년~3년	임금의 1/2, 월 70만원 한도



## 지원 내용

**적용대상은?** 취업보호기간(☞Q4)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즉 취업보호대상자.

**지급요건은?**

- 최소 1개월 이상, 즉 월 15일 이상 근무
- 임금은 근로자 계좌로 지급
- 사업장 특성별 해당요건

지원 대상	해당 요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한 취업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li> <li>•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li> </ul>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농업 등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li> <li>• 확인서식 : 농·어업 등 취업확인서(☞Q9)</li> <li>• 확인주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나, 해당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자체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법인</li> </ul>
지원 배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풍속영업)</li> <li>•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li> </ul>

\* 농·임·어·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제1항.



## Q 01 고용지원금 제도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월 50~70만원 한도)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 연장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일 경우 1년간 월 70만 원 한도에서 연장 지원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Q 02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면 왜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나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의 학력·경력과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직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용지원금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은 직무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용주는 이를 도와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 남한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취지와 의의가 있습니다.

## Q 03 북한이탈주민 중에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지원이 되나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다고 해서 모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에 정착한 지 5년 이내(거주지 보호기간)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야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업보호대상자'라고 하며,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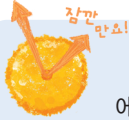
고용주님!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고용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실(☎02-2100-5785)' 이나 '하나원(☎031-670-93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하시기 전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채용하시고 나서 고용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낭패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려요! 취업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즉, 취업보호대상자가 고용지원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 Q 04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취업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2년간입니다.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했을 때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을 의미합니다.

### Q 05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이 연장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임금의 1/2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고용지원금을 1년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 보호결정 당시 60세에 도달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 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5급 이상인 경우에 취업보호기간이 최장 3년이 되며, 고용지원금도 최장 3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지원금을 연장하는 이유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 Q 06 고용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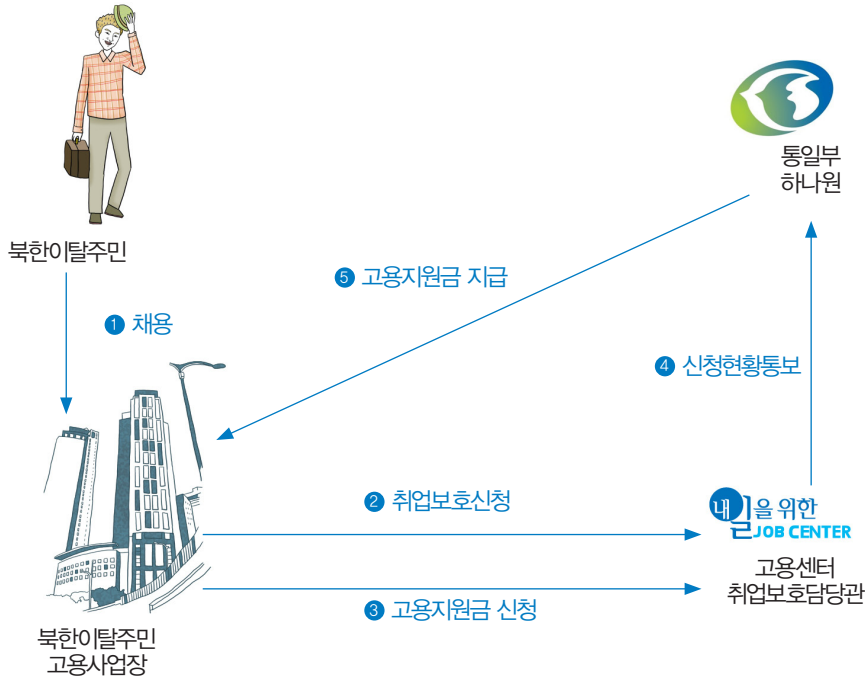
**언제 신청하죠?**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어디에 하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보호담당관)입니다.

**누가 신청해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합니다.

**지급절차는요?**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일체를 취합하여 분기가 지난 다음달(접수한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하나원장)에게 이송합니다. 통일부장관(하나원장)은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Q 07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그 다음에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대상자로서 취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보호) 신청서(별지 1호 서식) 혹은 취업 상황표(별지 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주는 채용 예정인(채용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전에 확인해 주세요! 첫째, 채용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 대상자여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 즉시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센터에 취업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취업보호신청 누락 등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아 고용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취업신청서(작성 예시) ①

[별지 1호 서식]

접수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취업</b>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b>특별임용</b>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김하나		입국한 날짜	2008. 3. 5			
	생년월일	1989. 3. 2		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푸른마을 101-1203						
학력	기간	학교		직업 훈련	기간	훈련 직종		
	2011.3~현재	00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			2009.05~07	ITQ		
	2001~2005	부산중학교 졸업			2010.06~10	전산회계		
주요경력	기간	근무처	담당 직무	직위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능력	
	2009.8~2010.05	진성식품	식품제조원	사원		중국어	상·중·하	
						영어	상·중·하	
취업희망조건	순위	취업처	직종	임금	근무지			
	1	무역업, 제조업 등	경리사무원	120만원	서울			
	2							
특기사항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취업·특별임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 년 7 월 4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김하나 (서명인인)</p> <p><b>통 일 부 장 관</b> 귀하</p>							
※ 구비서류 1.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2.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❶ 취업상황표 (작성 예시) ❶

[별지 2호 서식]

북한이탈주민 취업상황표 <본인 작성>				
성명	김 하 나	(남·여)	주민등록번호	890302-2*****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푸른마을 123-4567		전화번호	010-1234-5678
취업 경로	<input type="checkbox"/> 고용지원센터(취업보호담당관) 알선 <input type="checkbox"/> 신변보호담당관 알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 알선 <input type="checkbox"/> 생활정보지(벼룩시장)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검색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복지관·교회 소개 <input type="checkbox"/>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소개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기관 소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	직장 내 역할(담당업무) :			
고용 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용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임시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일용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일 평균 근로시간 ( 8 시간)		월급 ( 120만원 )	
	임금만족도 ( <input type="checkbox"/> 매우만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약간 만족 <input type="checkbox"/> 약간 불만 <input type="checkbox"/> 매우불만) 직장만족도 ( <input type="checkbox"/> 매우만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약간 만족 <input type="checkbox"/> 약간 불만 <input type="checkbox"/> 매우불만)			
취업업체 현황 <고용주 작성>				
사업장명	(주)통일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대표자	홍 길 동	전화번호/FAX	02-987-6543/02-987-6542	
사업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창립일	2010.3			
산업분류	<input type="checkbox"/> 농림어업 <input type="checkbox"/> 광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전기·가스·수도 <input type="checkbox"/> 폐기물·환경복원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도매·소매업 <input type="checkbox"/> 운수업 <input type="checkbox"/> 숙박·음식업 <input type="checkbox"/> 출판·영상·정보통신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 <input type="checkbox"/> 전문,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사업시설·사업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국방·사회보장 <input type="checkbox"/> 교육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보건·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예술·스포츠·여가 <input type="checkbox"/> 협회,개인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가사 <input type="checkbox"/> 국제 및 외국기관			
근로자수	총 ( 10 )명 (남 : 7 , 여 :3 )		북한이탈주민 ( 1 )명	
가입보험 (북한이탈주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료보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합니다. 2012 년 7 월 4 일 고용주 : 홍 길 동 취업자 : 김 하 나				
통일부장관 귀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 반 용 지 60g/ m<sup>2</sup>)

### Q 08 고용지원금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주는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시점	구비서류
최초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지원금 신청서</li> <li>•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필)</li> <li>• 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 (취업보호대상자 급여통장 사본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계좌지급 원칙, 현금지급액 제외</li> <li>•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신청시만)</li> <li>•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 내역(고용센터 발급)</li> </ul>
매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지원금 신청서</li> <li>•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필)</li> <li>• 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 (취업보호대상자 급여통장 사본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계좌지급 원칙, 현금지급액 제외</li> <li>•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li> <li>•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 내역(고용센터 발급)</li> </ul>

### Q 09 영농취업자의 고용지원금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농주 또는 영농사업주는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영농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 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
- 고용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 농지원부 혹은 자경증명서
  -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취업사실 확인서(별지 3호 서식)
  - 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  
(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 북한이탈주민 농·어업 등 취업확인서

● 고용지원금 신청서(작성예시) ●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b>고용지원금 신청서</b>			처리기간
					30 일
신사업 창주	회사명	(주)통일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전화번호 (팩스)	02-987-6543 (02-987-6542)	예금계좌번호	(농협)237-987-123456	
취보대 업호상 자	성명	김하나	입국한 날짜	2008, 3, 5	
	취업일	2012. 8. 1	전화번호	010-1234-5678	
취보대 업호상 자 금 급 세 명	가입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보험			
	고용지원금 신청액 (임금의 2분의 1) <sup>2)</sup>	월: ( 8 )월, 지급임금: ( 120만 )원, 신청액: ( 50만 )원			
		월: ( 9 )월, 지급임금: ( 120만 )원, 신청액: ( 50만 )원			
		월: ( )월, 지급임금: ( )원, 신청액: ( )원			
해당 분기 고용지원금 신청 총액	(100만)원	해당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지원금 수령 횟수	( )회		
연장 신청 사유	같은 업체 장기근속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노령	만 (   )세			
	장애등급	(   )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의 2제 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2 년   10 월   5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i>Dong</i> )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임금대장 사본 1부 통장사본(사업체) 1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연장신청 시) 1부 장애인증명서(연장신청 시)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홍길동 (서명 <i>Dong</i> )					



● 농·어업등 취업확인서(작성예시) ●

[별지 제3 서식]

발행연도-제 호				
<b>북한이탈주민 농·어농 등 취업확인서</b>				
인 적 사 항	성 명	김 하 나	주민등록번호	890302-2*****
	주 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푸른마을123-4567	입국일	2008. 3. 5
취 업 내 용	사업장명	(주)평화농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대표자	강감찬	전화번호	02-987-6543
	업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농업 <input type="checkbox"/> 어업 <input type="checkbox"/> 임업 <input type="checkbox"/> 수렵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업장주소	충남 공주시 정안대로 35		
	근로계약기간	2012. 8. 15 ~ 2013 8. 15(1년간)		
비 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농업·어업·임업·수렵업 등의 취업사실을 확인합니다.				
2012 년 10월 5일				
○○ 기관장				관인
※ 구비서류 : 농지원부 혹은 자경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자 통장사본, 사업주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 Q 10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고용센터장(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지원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취업보호담당관은 분기가 지난 다음달(접수한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 서류를 통일부 장관(하나원장)에게 이송합니다. → 통일부 장관(하나원장)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직접 지급(고용주 통장으로 계좌 이체)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에서부터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 40여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Q 11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도 있나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취업보호대상자의 채용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고용주에게 신규 고용 촉진장려금,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장려금, 외국인대체고용지원금,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4조 등에 따라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즉, 동일인에 대한 지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기업주의 판단에 따라 한 가지 지원금을 선택해야 함.
-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기관, 법정단체, 보조금 단체 등인 경우(예를 들면, 중앙정부, 지자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 취업보호 중지 또는 종료가 결정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Q 12 이럴 때는 고용지원금이 중지(취업보호 중지) 또는 제한 돼요!

이를 '취업보호의 제한' 이라고 합니다. 즉, 정당한 사유 없는 자의 퇴직, 징계, 면직,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경우 취업보호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업보호를 중지 또는 종료하여 지원 대상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했더라도 취업보호를 해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가 고용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체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취업보호기간 중 6개월을 제한합니다.
-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해 면직된 경우에는 취업보호기간 중 1년을 제한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의 중지 및 종료가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게 이 점을 잘 알려 주세요! 북한이탈주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로 회사를 이직하고자 할 때는 위와 같이 '취업보호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북한이탈주민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행동을 먼저 할 수 있으니까요!

### Q 13 이럴 때는 고용지원금이 중지(취업보호 중지)되지 않아요!

다음과 같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자의로 퇴직해도 취업보호 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질병 등을 사유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취업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
- 보호기간 내의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게 이 점을 잘 알려 주세요! 회사의 사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세요. 다른 회사에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면 취업장려금도 연결되어 받을 수 있고, 고용지원금도 본인에게 남은 취업보호기간 동안은 기업주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세요.

#### Q 14 고용지원금이 해당되는 입사일과 퇴직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보험의 취득일이 입사일이 되며, 고용보험 상실을 퇴직일로 봅니다. 간혹 실제 채용하여 근로를 시작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지체하여 고용지원금을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가 모두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용 즉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권장합니다.



## 고용지원금 제도를 현장 사례별로 알아볼까요?



### Q 15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서 받는 고용지원금이라며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취업보호제도는 고용주와 북한이탈주민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취업장려금을 3년간 최대 1800만원(1년 근무시 550만원, 2년 근무시 600만원, 3년 근무시 6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지원금의 일부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고용주가 자진하여 고용지원금 일부를 북한이탈주민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들과의 화합에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금 종료시

임금 삭감의 효과가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용주는 채용한 북한이탈주민이 직업적응을 통해 직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실질 임금을 인상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히 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A씨가 어느날 회사에 상담을 요청하여 응하니 기업주에게 분기마다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의 일부를 본인에게 지원해 줄 수 없냐며 어렵게 부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A씨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적절한 지, 또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일반 타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쉽게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께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남한에도 근로자 채용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그 사례입니다. 어린이집에 채용된 보육 교사는 국가에서 임금부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급여 이외에 자신의 보조금에 대해 따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조금은 국가에서 보육교사 급여를 보완해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지급되었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자신들의 급여에 지원금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지원금은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기업에 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지급 기간에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세요. 북한 이탈주민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께서는 급여와 취업 장려금을 차근차근 모으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얼마를 모을 수 있고, 그 목돈으로 자신이 계획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면 마음을 잡고 더욱 열심히 일 하는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 Q 16 다른 직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도 되나요?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24개월)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이 입사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은 기간을 뺀 잔여기간 내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6개월간 고용지원금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라면, 현재 고용된 직장에서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6개월 고용지원금 지급받음+1년6개월 고용지원금 지급됨 = 24개월



거거주보호기간(5년) 중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2년간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회사에서 2년간 계속 근무 시 1년 연장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 최대 3년까지 고용지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회사를 옮기면 총 2년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취업장려금도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때 더 이롭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께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잘 적응하여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Q 17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지원금 지급이 해당되나요?**

물론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농·임·어·수렵업 등에서 법인이 아닌 고용주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 이들 중 취업보호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아닌 사업장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농가이어야 합니다.

동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체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나,
- 해당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자체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의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확인 서식은 농·어업 등 취업확인서(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지침 별지서식 3호, Q9)를 활용해 주세요.

**Q 18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을 가입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급여도 얼마 안되는데 공제를 하고 나면 급여가 더 적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보험만 가입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K 회사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L씨는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만을 주장합니다.

일부만 가입하려면 회사 측에서도 번거롭고 하여 모두 다 들겠다고 하니 반발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4대보험 가입기준은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지원에는 기초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특례, 국민연금 가입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은 이 특례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일반국민의 기초생계비 수급자와 동일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의료보호 특례(건강보험 가입 특례)

-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 적용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광주민중화운동 보상자)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내용은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하고 있으며, 1종수급자로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다음의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에 해당할 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 ● 2012년도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근로능력가구	664,025	1,130,637	1,462,648	1,794,660	2,216,673	2,458,685
근로무능력가구	1,130,636	1,462,648	1,794,660	2,216,673	2,458,685	2,790,696
취업특례가구	2,213,416	3,768,788	4,875,492	5,982,200	7,088,908	8,195,616

-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시 조사기준을 준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 취업특례로서 거주보호기간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신규 및 재취업 모두 포함)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400%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 특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도 대상입니다. 단, 북한이탈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정착지원법 제26조 2조항)가 있는데, 그 대상은 보호 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60세 미만인자입니다. 특례 내용은 동 대상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도달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점 유의하세요!

채용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며,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보험특례로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Q 19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급여에서 4대 보험료 공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번 돈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설계하는 인식도 부족한 편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혜택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갖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4대보험 요율표 ●○

건강보험요율 (사업장,근로자 2.90%씩 반반 부담)

년도	보험요율
2011년	보수월액 X 5.64%
2012년	보수월액 X 5.80%

\*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의 6.55%  
(사업장, 근로자 6.55%씩 각각 부담)

연금보험요율 (사업장,근로자 4.5%씩 반반 부담)

년도	보험요율
2011년	보수월액 X 9.0%
2012년	보수월액 X 9.0%

고용보험요율 (사업장0.8%, 근로자0.55% 각각 부담)

년도	보험요율
2011년	보수월액 X 1.35%
2012년	보수월액 X 1.35%

산재보험요율 (사업장 부담)

년도	보험요율
2011년	보수월액 X 1.08%
2012년	보수월액 X 1.08%

Q 20 채용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함께 연대하는 기관이나 제도가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을 통하여 신규직원  
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였는데, 업무 착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고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을 연대  
하는 기관이나 제도가 있습니까?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책임을 연대하거나 지원하는 기관과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고용지원금 지급 등의 문제는 각 지역  
별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처리하는 방식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해결책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알선하는 지원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취업지원센터, 전문상담사, 하나센터, 고용노동부 취업보호담당관, 취업패키지 실시 기관) 등과 충분히 논의한 후, 채용하십시오.

채용전, 북한이탈주민의 경력, 건강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사 후, 적절한 업무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21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취업장려금제도는 무엇입니까?**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정착금 제도입니다.

정착 초기에 북한이탈주민에게 현금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해 1년차 취업장려금 550만원을, 6개월 단위로 250만원씩 2회 지급(총 500만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동 규정은 2010년 5월 1일 이후에 취업한 자부터 적용).

취업장려금은 매 취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이후에 신청하며, 예외적으로 6개월차 장려금은 6개월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차 장려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지급합니다. 1)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 취업장려금을 신청한 자가 1년차 장려금 550만원 대신 6개월 장려금 2회 지급(총 500만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취업기간을 확인합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2개 보험 가입으로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이 됩니다.

● ● 취업장려금 지급기준과 금액 ● ●

구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신청 횟수
취업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50	최대 6회
	1년차	550	1회
	2년차	600	1회
	3년차	650	1회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간의 취업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낮선 근무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힘들어하는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게 제도를 잘 설명하여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역시 북한이탈주민도 고용센터에 취업보호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취업장려금 지급에서 취업일은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입니다.

## Q22 자격취득장려금은 어떤 제도입니까?



생산라인에서 열심히 일하던 북한이탈주민 A양이 최근 직업학교에 다니려고 직장을 그만 두겠다 합니다.

전문 직종으로 직업을 선택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단순히 직업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전문 직종을 갖기가 힘든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고 직업학교를 다니는 동안의 생활에 대해 우려하니 직업학교를 다녀도 일정정도의 국가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직업훈련장려금**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장려금(120만원~24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격취득장려금** : 북한이탈주민이 500시간 직업훈련 수료 또는 독학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1회에 한하여 자격취득장려금(2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실업자훈련과정 (우선선정직종훈련,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을 교육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재직근로자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과정은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중이더라도 독학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ex, 컴퓨터 활용능력,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대상 정책자금 우대지원은 무엇인가요?



### 지원 대상

2009년 1월 이후 2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기업평가등급을 2등급까지 상향 조정

### 대상 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제외한 모든 정책자금(직접·대리 제출)

2010년 정책자금 규모(3.1조원) : 창업기업지원(11,000억원), 기술개발사업화(1,580억원), 신성장기(11,600억원), 사업전환(1,475억원), 긴급경영안정(2,500억원), 자산유동화(200억원)



### 등급 조정

북한이탈주민 2인 이상 고용시 기업평가등급을 최대 2등급까지 상향조정하여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정책자금을 지원

2~3인 고용(1등급 상향), 4인 이상 고용(2등급 상향)

### 금리 인하

북한이탈주민 2인 이상 고용기업에 대해 연간 0.1%p ~ 0.2%p, 총 8년간 1.6% 까지 금리 인하

구 분	기 준	개 선
2인 추가고용	해당 없음	0.8%p(0.1%p, 8년)
4인 추가고용	해당 없음	1.6%p(0.2%p, 8년)

### 주관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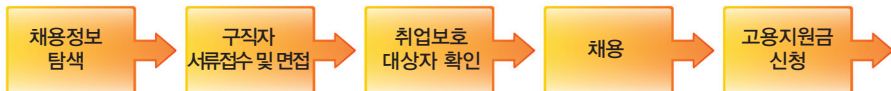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 채용 방법 및 절차



## 북한이탈주민 채용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 Q 01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채용해야 하나요?



**채용정보 탐색**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하나센터, 고용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그 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종교단체, 민간 취업알선단체 등)에 구인조건에 적합한 북한이탈주민 구직자가 있는 지 알아봅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경우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각 기관에 구인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직자 서류 접수 및 면접 :**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의 채용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접수하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보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도 이력서가 무엇 인지 알고 있으며, 취업을 하려면 면접을 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께서 이력서 등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신다면, 북한이탈주민 역시 본인이 선발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채용된 회사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취업보호자 확인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였다고 해서 모두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자신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 있으므로 고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3).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고용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실(02-2100-5785)이나 하나원(031-670-932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채용 :** 채용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근로조건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끔 고용주가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한 달에 약 얼마 정도'가 된다고 한 근로조건을 '기본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용과 함께 근로조건, 회사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 제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 고용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1회에 한하여 접수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못한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금 소급적용 제한'에 유의하세요!**

고용지원금의 지급은 취업보호대상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주가 고용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해당분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을 잘 챙겨야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관련 채용기관 및 사이트 안내

### Q 이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을 이용하면 되나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  
(<http://www.nkrf.net>)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신력있는 취업포털 사이트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채용정보, 인재정보, 취업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업서비스와 개인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인조건에 적합한 북한이탈주민 구직자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취업지원센터 연락처 : 02·3215·588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http://www.work.go.kr/jobcenter>)

전국의 54개 고용센터에는 취업보호담당관이 배치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알선, 고용지원금 접수 및 신청,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 조사, 취업보호자료 작성 및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각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정보마당, 알림마당, 열린마당, 센터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구인·구직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마당의 채용정보, 인재정보, 취업가이드 코너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4개 지역의 고용센터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청

센터명	관할지역	주소	대표전화/팩스
서울고용센터	성북구,종로구,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1~4층	02-2004-7301 02-6915-4015
서울강남고용센터	강남구,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7,8,9,10층	02-3468-4794 02-6915-4029
서울동부고용센터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 II벤처타워 동관 3,4,5층	02-2142-8924 02-6915-4049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구,서대문구,양천구,은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빌딩 4~5층	02-2077-6000
서울남부고용센터	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번지	02-2639-2300~7 02-6915-4070
서울북부고용센터	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34-2	02-2171-1700 02-6915-4085~92
서울관악고용센터	금천구,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2-4 대룡포스트 타워 3차 2,3층	02-3282-9200 02-6915-4099

### ◎ 중부청

센터명	관할지역	주소	대표전화/팩스
인천고용센터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12번지 (문화회관길125)	032)460-4701~4 0505)130-0017~22
인천북부고용센터	강화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3-12 영산빌딩 2~5층	032)540-5641~649 0505)130-0029~36
수원고용센터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및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번지 신동아파스텔 2~4층	031)231-7864 0505)130-0085~0096
용인고용센터	용인시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81-1번지 강남앤플러스빌딩 4층	031)289-2210 0505)130-0098~100
부천고용센터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86-3	032)320-8900 0505)130-0049
인양고용센터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및 인양시 만안구, 동안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 메세타워 3,4층	031)463-0700 0505)130-0123~0134
광명고용센터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463-38 힐팰리스 1,2층	02)2680-1500 02)6915-4112~4
안산고용센터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1	031)413-3106~7 0505)130-0139
성남고용센터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9번지 도촌대덕프라자 2차 4~6층	031)739-3120
평택고용센터	평택시, 오산시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 장당프라자2층	031)646-1205 0505)130-0107
의정부고용센터	포천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철원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54 신동아파라디움빌딩1,2층	031)828-0900 0505)130-0055(0062)
고양고용센터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및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36-2	031)920-3937 0505)130-0072~80
춘천고용센터	춘천시, 인제군, 가평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넥서스프라자 2층~5층	033)250-1902 0505)130-0178
강릉고용센터	강릉시, 동해시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03-18번지 1~5층	033)610-1919 0505)130-0185
원주고용센터	원주시, 횡성군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51-4번지 한신프라자 2,3층	033)769-0900 0505)130-0194
태백고용센터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5-14	033-552-8605 033)550-8660
영월고용센터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1	033)371-6260 0505)130-0205

### ◎ 부산청

센터명	관할지역	주소	대표전화/팩스
부산고용센터	남구, 진구, 시하구, 영도구, 연제구, 중구, 동구, 서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0-3번지	051)860-1919 051)719-4501~11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장군, 수영구,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89-18	051)760-7101 051)719-4525



부산북부고용센터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 2270-3	051)330-9901 051)719-4546~9
창원고용센터	의창구,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7-3 고용센터빌딩1-7층	055)239-0940 0505)130-1024
김해고용센터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1-5	055)330-6400 0505)130-1050~7
양산고용센터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85-1번지	055)379-2400 0505)130-1068
진주고용센터	산청군,진주시,사천시,함양군,거창군,합천군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127-12번지 안성빌딩 2~5층	055)753-9090~2 0505)130-1076~83
울산고용센터	남구,울주군,동구,중구,북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04-2	052)228-1919 0505)130-1003
통영고용센터	통영시,고성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8	055)650-1800~2 055)650-1849

◎ 대구청

센터명	관할지역	주소	대표전화/팩스
대구고용센터	수성구,남구,동구,중구,달성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번지	053)667-6000 053-720-4010
대구북부고용센터	달서구,성주군,고령군,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469-3	053)605-6500 053)720-4036
대구강북고용센터	북구,군위군,칠곡군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420-1	053)606-8000 053)720-4049-50
구미고용센터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6~60 52번지	054)440-3300
포항고용센터	포항시 남구,북구,울진군,영덕군,울릉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8-3	054)280-3000 054)280-3103
영주고용센터	영주시,봉화군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3동 36번지	054)639-1122 054)639-1130
안동고용센터	청송군,영양군,안동시,예천군,의성군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715-3	054)851-8061 0505)130-3081

◎ 광주청

센터명	관할지역	주소	대표전화/팩스
광주고용센터	화순군,남구,동구,나주시,북구,곡성군,영광군,함평군,담양군,구례군,장성군,광산구,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190-1	062)609-8500 062)712-4501
전주고용센터	진안군,무주군,임실군,전주시,완산구,전주시 덕진구,장수군,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0-1번지	063)270-9100 0505)130-4042
익산고용센터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381-1	063)840-6500 0505)130-4070
군산고용센터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52-4번지	063)450-0600 0505)130-4089

목포고용센터	진도군, 무안군, 장흥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해남군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121-4번지	061)280-0500 0505)130-4002
순천고용센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245번지	061)7209-114 0505)130-4021~4023
여수고용센터	여주시	전라남도 여주시 문수동 111-1번지	061)6500-155 0505)130-4034

### ◎ 대전청

센터명	관할지역	주소	대표전화/팩스
대전고용센터	유성구, 중구, 금산군, 동구, 대덕구,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59번지	042)480-6000 042)717-4006
공주고용센터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01-1번지 스타타워빌딩 5층	041)854-8219 0505)130-2001
청주고용센터	괴산군, 청원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및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5 (사창사거리 월드피아오피스텔 내)	043)230-6700
충주고용센터	음성군,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507	043)850-4000 043)842-7763
천안고용센터	예산군, 당진군, 아산시 및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37번지 2~5층	041)620-7400 0505)130-2021
보령고용센터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498-6	041)930-6200 0505)130-2041
서산고용센터	태안군,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85-1 대신빌딩 6층	041)669-1919 0505)130-2053

## Q 02 북한이탈주민을 알선해 줄만한 지역의 전문가나 기관이 있나요?

###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201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의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장에서 벌어지는 긴급한 문제부터 취업, 심리, 가족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88명의 전문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싶을 때 각 지역담당 전문상담사를 찾는 것도 구직자를 발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센터명	관할지역	담당자	대표전화/팩스
서울 동부	송파, 강동, 강남, 서초, 관악, 동작, 성동, 광진	서길옥	02)6285-8600
		박경석	02)2668-8600
서울 서부	강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종로, 중구	조정연	02)6737-5601
		박정률	02)6285-8601
		김경수	02)2690-8762
서울 남부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김정혜	02)6737-5602
		한정은	02)6737-5603
		김은진	02)6737-5603
서울 북부	노원, 성북, 중랑, 강북, 도봉, 동대문	김영인	02)975-2465
		서미경	02)934-1773
		최양숙	02)949-0123
		원지현	02)949-0123
부산	전지역	이정옥	051)806-3825
		임성옥	051)806-3825
		한순옥	051)806-3825
울산	전지역	석주은	052)296-3161
		이주영	052)295-3161
		신진동	052)295-3161
대구	전지역, 경산군	조 속	053)526-7789
		박성현	053)526-7789
		한은영	053)526-7789
경남 동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윤필수	055)263-4138
		양진희	070)7122-8802
		강민서	010)3323-3577
경남 서부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신창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강민서	010)3323-3577
경북 동부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지민정	054)256-0456
경북 서북부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칠곡군	김기현	054)444-8861
		신미란	054)444-8898
		장일국	054)452-1884
인천 남동	남동구, 연수구	이명순	032)439-1172
		박성환	032)439-1174
		최윤정	070)7649-3910
		윤슬기	032)460-4856
		최은희	032)422-3772

센터명	관할지역	담당자	대표전화/팩스
인천 부평	부평구, 계양구	조진식	032)527-9743
		차혜숙	070)8708-4221
		이기선	070)4249-7359
광주 북부	북구, 전남 북부권(목포, 무안 등)	김명희	062)528-1070
		김원자	070)4111-2395
광주 서부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김경란	062)374-4264
		장종목	062)234-3322
전북	전지역	라연옥	062)227-7789
		이영란	063)227-7789
		김의남	070)7768-3366
전남	전남 남부권(순천, 여수 등)	김무성	
		박경임	061)753-3954
대전	대전 전지역	한봉숙	061)651-5257
		정희조	042)282-9195
		이춘근	070)7122-8356
		현춘옥	042)280-8538
		이영화	042)220-0127
충남 서북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박정은	041)571-4064
		이랑희	
		백병희	041)547-1032
충남 중남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김기숙	041)667-2303
		최경연	041)881-1136
충북	전지역	이인경	043)230-8647
		김선미	043)855-3000
경기 동부	용인, 성남, 이천, 광주, 하남, 양평, 여주	정영권	031)714-0125
		이은선	031)324-5407
		정재현	070)7122-8437
		정옥란	031)656-2013
경기 남부	화성, 오산, 평택, 안성	김홍철	
		정찬선	031)655-9005
		이경한	
경기 서부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과천	김분녀	032)325-2161
		한순영	
		김선아	031)453-4511
		이미경	032)320-8988
경기 중부	안산, 군포, 의왕, 수원	김지향	031)888-0688
		강수암	031)254-1992
		김은미	031)494-0761
		장춘화	031)398-4785

센터명	관할지역	담당자	대표전화/팩스
경기 북부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	남성경	070)7605-0083
		박현자	070)7605-0084
		맹동호	070)8831-2020
		이윤신	031)539-9297
경기 서북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남진애	031)924-5784
		정성수	070)8273-0082
		김정림	070)8274-0082
		한옥자	
이명숙			
강원 동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최승하	033)647-2363
		김광기	033)633-2964
강원 서부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영월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노연희	033)742-2859
		심영설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지원을 위해 통일부에서는 2009년부터 전국에 31개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3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지역에 배치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3주간 교육을 지원한 후, 1년간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적응과 역량을 파악하고 있어 지역인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희망하시는 고용주께서는 구인정보를 각 지역의 하나센터에 제공하고 인재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센터 현황**

	기관명(운영단체)	활동지역	연락처	홈페이지
서울	동부하나센터 (한적서울지사관악봉사관)	송파, 강동, 강남, 서초, 관악, 동작, 성동, 광진	02)882-5210~1	cafe.naver.com/sdh/anacenter/
	서부하나센터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종로	02)2668-8600	www.gayang7.or.kr
	남부하나센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02)2690-8762	www.han-bit.or.kr
	북부하나센터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 성북, 중랑, 강북, 도봉, 동대문	02)975-2465	www.gongneung.or.kr

	기관명(운영단체)	활동지역	연락처	홈페이지
부산	부산하나센터 (부산YWCA새터민지원센터)	전지역	051)441-0900	www.psywca.or.kr
대구	대구하나센터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경산	053)356-0463~4	www.nkpeople.or.kr
인천	남동하나센터 (하이사회복지센터)	남동,연수,중동,웅진	032)437-1173	www.han-bit.or.kr
	부평하나센터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부평,계양,서강화	032)527-9743 032)529-8607	www.gongneung.or.kr
광주	서부하나센터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부평,계양,서강화	051)441-0900	www.psywca.or.kr
	북부하나센터 (한적광주·전남지사)	북구,목포,영광, 장성,담양,곡성,구례, 함평,나주,무안	062)528-1070	*
대전	대전하나센터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전지역	042)283-9191	www.saengmy-eong.net
울산	울산하나센터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전지역	052)296-3161	www.jsbwelfare.or.kr
경기	동부하나센터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용인,성남,이천,광주, 하남,양평,여주	031)714-6333	www.chungsol.or.kr
	중부하나센터 (군지종합사회복지관)	안산,군포,의왕,수원	031)410-6070	www.gunjawelfare.or.kr
	서부하나센터 (덕유사회복지관)	부천,광명,시흥, 안양,과천	032)329-2325	http://dukyu.bucheon4u.kr
	북부하나센터 (가족보건복지협회)	의정부,포천,남양주, 양주,동두천구리, 가평,연천	031)544-1154	www.knhn.or.kr
	서북부하나센터 (우림복지재단)	김포,고양,파주	031)914-5784	www.urimwelfare.or.kr
	남부하나센터 (평택YMCA)	화성,오산,평택,안성	031)656-2000	www.nambuhana.net
강원	동부하나센터 (동해지역자활센터)	강릉,동해,태백,속초, 삼척,고성,양양	033)535-1669	www.동해자활.kr
	서부(춘천)하나센터 (자유총연맹강원지부)	춘천,원주,홍천,영월, 평창, 정선	033)254-6670	cafe.koreaff.or.kr/ cafe_gangwon
	서부(원주)하나센터 (명료종합사회복지관)	철원,화천,양구, 인제, 횡성	033)762-8131	www.mlwfc.or.kr
충북	충북하나센터 (한적충북지사)	전지역	043)230-8641	www.redcross.or.kr/ chungbuk
충남	서북부하나센터 (천안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아산,서산,홍성, 예산,당진,태안	041)571-4064	www.ssbok.or.kr
	중남부하나센터 (자유총연맹충남지사)	공주,보령,논산,계룡, 금산,연기,부여, 서천,청양	041)881-1146	www.kfcn-hana.or.kr
전북	전북하나센터 (전주YMCA)	전지역	063)227-7789	www.jeonjuywca.or.kr
전남	전남하나센터 (한적광주전남지사순천봉사관)	순천,여수,광양,진도, 해남,완도,강진,장흥, 보성,고흥,화순,신안	061)753-3951~2	*

	기관명(운영단체)	활동지역	연락처	홈페이지
경북	동부하나센터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경주,영천,청송, 영덕,청도,울진,울 릉,영양	054)256-0456	www.echangpo. or.kr
	서북부하나센터 (경북이주민센터)	구미,칠곡,김천,안동, 영주,문경,상주,봉화, 의성,군위,성주, 고령,예천	054)444-8861	www.hanac.or.kr
	동부하나센터 (한적경남지사창원봉사관)	창원,마산,진해,김해, 밀양,양산,의령, 함안,창녕	055)263-4138	www.redcross.or.kr/ gyeongnam
	서부하나센터 (한적경남지사진주봉사관)	진주,통영,사천,거제, 고성,남해,하동,산청, 함양,거창,합천	055)763-2215	www.rcv.or.kr
경남	동부하나센터 (한적경남지사창원봉사관)	창원, 마산,진해,김해, 밀양,양산,의령, 함안, 창녕	055)263-4138	www.redcross. or.kr/gyeongnam
	서부하나센터 (한적경남지사진주봉사관)	진주, 통영,사천, 거제,고성,남해, 하동,산청, 함양, 거창, 합천	055)763-2215	www.rcv.or.kr
제주	한적봉사회 제주지사협의회	전지역	064)723-2123	www.redcross. or.kr/jeju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알선은 지역 및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간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유입수가 상이하므로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안내하는 여러 경로를 모두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연령대, 주요 종사 직종 등에 관한 정보 등은 지원 기관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Q03 북한이탈주민이 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가 무엇입니까?



지원기관을 통해 채용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성공패키지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취업장려금과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는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단계별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조건부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도 대상이 되어 취업장려금제도와 별도로 체계적인 직업상담을 통한 진로설정, 상담, 직업훈련기회 등을 제공받고 취업알선 유지까지 제공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여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성공수당(최대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는 이 수당을 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단순 취업알선이 아니라 지자체 및 고용센터의 참여자 선정, 전문 위탁기관의 진로상담 및 알선 등 체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취업알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04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관련 Q&A



## Q01 북한이탈주민 근로자가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탈주민을 어렵게 채용했는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로서 참 난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고용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남한의 직장생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특히, 채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셨던 고용주라면 어느 날 아무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직원으로 인해 회사 운영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적잖은 섭섭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북한이탈주민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상 밖의 특별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와서 북한의 가족 중 누가 자신을 찾는다고 한다던가, 예기치 않게 북한의 부모나 형제의 사망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등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 북한이탈주민은 당장 출근을 해야 하는 자신의 현실을 잊고 당황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 때를 놓치게 되지요. 뒤늦게 회사나 고용주 및 동료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때도 연락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에 아예 전화번호를 바꾼다던가,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께서는 연락이 안되거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근로자가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라면 잘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해결해 나가자고 알려주세요.



**TIP** 회사의중간관리자중북한이탈주민의상황과입장을이해하는멘토관리자를 연결해주세요.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의 중재자 역할 및 남한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공유하는 역할)

직장생활의 기본 수칙은 입사초기에 꼼꼼히 안내해 주세요.

한 두번의 사례는 “왜 그런 상황이 발생 했는가” 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단, 빈번하게 발생될 때는 북한이탈주민이라 할지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어떤 불이익을 어떻게 당하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Q 02 급여를 적정히 책정했다고 생각하는 데, 급여가 적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한과 북한의 직업과 직장생활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북한의 직업은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 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조정과 통제, 계획에 따라 배치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직업세계를 북한식으로 이해 할 가능성이 크며, 남한사회의 다양한 직업형태와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제수당, 휴일 등의 근로복지 등 제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차이와 상관없이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북한이 탈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정보들을 공공의 정보보다 더 신뢰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온 선배나 동료들이 하루 몇 시간을 근로하여 얼마의 급여를 받는 지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는 무슨 공장에 다니는데 얼마를 받는 다더라” 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급여를 설명하실 때 기본급, 제수당, 제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받게 되는지,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면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명목임금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방거주를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물가가 낮아 실질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겠 습니다.

기본임금과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세요.

타 지역의 다른 업체와 비교 시에는 정확히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외에도 남한사회의 일반적 근로기준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Q03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에 대한 의심이 많고, 출퇴근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취업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북한사회는 한번 기업소(직장, 회사)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이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구직시 더욱 고민하게 됩니다. 또,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중국에서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내에서 불명확한 신분으로 힘들게 직장생활을 한 경험 때문에 남한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와 거주지의 거리를 중요시하는 것은

첫째, 북한사회가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멀미와 차냄새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이용을 꺼려합니다.

둘째, 기숙사 등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대한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거주지 출퇴근을 원합니다. 북한사회는 자신의 거주지 바로 옆에 학교, 그 옆에 기업소 등이 자리하고 있어 점심의 경우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경우도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요건에서 선택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TIP** 출·퇴근시의 대중교통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또한 회사에 교통편이 있다면 적극 안내해 주시면 채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04** 작업지시자의 지시사항을 듣지 않고, 사장님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사회는 주민의 조직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북한주민은 조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는 생활 하기 힘들 정도로 공식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조직 활동에 참여합니다. 즉, 소년단, 청년동맹, 직업동맹, 민주여성동맹 등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또한 여행이나 이사를 위해서는 인민반장에서 직장에 이르기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철저한 보고와 승인의 통제사회입니다. 이처럼 조직화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왜 직장이라는 조직에 적응이 이토록 힘들까 의구심을 가지는 고용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조직생활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를 떠나 생활하면서 북한과 반대되는 문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남한은 자유로운 국가이므로 북한과 다르다, 또는 반대이다' 라는 인식으로 고착화되어 지시와 규제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는 다른 남한사회의 일반적인 조직문화와 사회관계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예를 들면, 사장, 인사담당자 등)의 지시만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 보다 상위직급자이더라도 똑같이 사장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상위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공서열 의식이 강하여 경력인정에 대한 인식이 없는 편입니다. 나이 어린 상사가 지시하는 것을 '당신은 형님도(부모도) 없나? 어디 어린 사람이...' 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직장문화에 대해 차근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한사회의 직급과 직책이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북한사회의 경험만으로 직급에 따른 권한을 권력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자들이 하는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운영이 어려우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북한의 기업은 대부분 국가운영 임을 인지)



## Q05 남한 동료들, 또는 같은 북한이탈주민 동료들과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갈등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 그렇지요?

분단 60년간 남북한은 문화와 언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습관은 대체로 북한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 분단의 시간은 소통방식과 상호작용에도 큰 차이를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 차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와 남한의 동료근로자들의 인식차이를 볼 수 있는 예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

“눈치로 알아듣습니다. 뭐를 가져오라 하는데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대충 눈치로 생활하는데 어찌나 신경이 쓰이는지...”



“직장생활 할 때 섭섭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어찌 그리 우리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고향 떠난 것도 서러운데... 가끔은 일부러 나 알아듣지 못하라고 영어를 쓴다고 느껴진다니까요.”

“남한사람들은 도통 속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한판 싸우는 게 낫지 어찌나 돌려서 이야기하는지.. 그게 더 기분 나쁩니다. 놀리는 것 같고..”

“어떤 땐 북한에서 온 사람보다 더 친근해요. 안내도 잘해주고, 저한테 묻기도 하고, 제가 집에서 연락왔다하면 다 앉아서 함께 고민해주고, 직장언니가 아니고 가족이에요.”





### 남한의 동료 근로자들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잘 해 줄라고 해도 어찌나 이렇소 저렇소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어쩔 땐 내가 더 찢찢맨다니까요. 진짜!”

“사장님이나 팀장님이 차별한다고 느꼈어요. 내가 보기엔 별다르지도 않더니만, 맨날 잘 해주라 잘 해주라 하니까 알밋더라고요. 지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북한사람 남한사람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우린 동포잖아요.”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는 단순히 어휘전달의 차이를 넘어서 감정의 소통에도 오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한글을 읽지만 북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무시당함”을 힘들어 하는데, 이러한 오해에서 생기는 갈등들도 많습니다.

“무시한 사람이 없는 무시당함”은 문화적 차이의 결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여러 차례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이 단계만 잘 극복하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6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누구보다 애사심을 가진 직원들로 자리합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이미 다른 문화적 바탕이 있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간 불신을 줄이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적응에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직원들과의 갈등은 주로 입사 초기에 발생합니다. 아마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겠지요! 이러한 갈등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동료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더 잘해보겠다는 경쟁의 표현이 남한 동료들은 다른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남한 동료들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같은 북한에서 왔는데 누구는 어떤데 당신은 왜 이렇니까?” 라는 반응은 삼가 주세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남한사회의 일반적인 정보인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북한이탈 주민들은 처음 접한 정보에 대한 신뢰가 큼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감정이 상하셨을 때는 “나는 이리이러하다.” 라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Q06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신분이 확실한지, 또 채용했을 때 정부나 관공서에서 귀찮게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탈주민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용주 여러분과 행정서류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도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제3국을 통해 입국하는데, 입국 후에도 국가기관을 통해 여러 차례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철저한 검증절차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우리 국민입니다. 이들을 대할 때 “주민등록증이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이냐?” 등의 질문보다는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고 오셨대!” 라고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는 기업에 입사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기업환경에 수용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실험, 경험의 장으로 여기며 북한이탈주민을 통일의 시금석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했다고 정부나공공기관에서 고용주 여러분을 힘들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여러 혜택들이 주어지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TIP**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로 전입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선정되어 지원 받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특례제도에 의해 취업 후에도 5년간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등에 관련하여 미리 숙지하시면 고용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Q 07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부는 2005년도 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목표를 ‘보호’ 에서 ‘자립·자활 중심’ 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장기근속기간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남한사회 정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착에 힘들어 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있습니다. 직장 내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두통, 소화기능의 저하, 갑작스러운 몸살 등도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상황에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점을 정착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정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대하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직장 환경이 형성될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함께 하는 우리 동료로 자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길인배 외(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만조(2011).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복지에 관한 연구 :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교육을 중심으로. 극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노경란 외(2009).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제도 방안 연구. 서울 : 통일부.
- 전우영·조은경(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조정아 외(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통일연구원.
- 통일부(2012). 2012 통일백서.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10). 2010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 서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허충영(2005). 북한 노동제도 분석과 노동력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 외(2001). 탈북인의 공, 사적 관계와 의사소통.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13. 통일부(2007). 2007 통일백서.
- 김선화 외(2010).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서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만  
든  
이  
—

연구책임자

전연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공동연구자

노경란 (상신여대 교육학과)

조재희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최재령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그들**  
길라잡이

---

인쇄일 2012년 12월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5786

디자인 윤여향 prgasong@nate.com

인 쇄 유성사 02)837-0700

---

※ 저작권법에 의해 허락없이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